

제2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규선 의원 발의】



2025. 4. 28.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12호로 2025년 4월 14일 이규선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4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관급공사에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구민에게 실질적인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사업주의 노력에 관한 사항(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5.4.15.~2025.4.22.)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취지

- 우리 구(區)는 지난해 하반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 조사 결과 15세 이상 인구 35만 8천명 중 취업자가 23만 7천명(고용률: 66.2%)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전체 고용률 1위를 달성하였음.
- 본 조례안은 이러한 고용 창출과 취·창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음.

○ 주요 내용에 대한 검토

가.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는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적용범위,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는 사업주의 노력에 관한 내용을 담아 총 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 정 안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하여 적용한다.

- 안 제3조에서는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본 조례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서울시 내 6개의 자치구(강동, 구로, 금천, 동대문, 노원, 마포구)에서 운영 중이며 모든 자치구에서 5천만원 이상의 금액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제 정 안

제4조(구청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의 일자리 창출
 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 기관의 활성화
 3.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
 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 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 고용
2. 구민 우대고용 계획 및 고용현황 제출
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각각 구민의 고용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노력을 규정함.

○ 종합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시 사업주에게 구민을 우대 고용하도록 권장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여겨짐.
- 또한,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므로 상위법 저촉 사항은 없음.
- 다만, 본 조례안의 기대효과인 구민 취업 효과를 증대하려면 구민이 관련 자격증 미취득, 면허 미습득 등의 채용 기준 미달로 인해 고용할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여야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므로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업무 추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생략)
 - 8. 지역 고용창출 및 지역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국가 시책과 지역 노동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지역주민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 훈련의 실시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